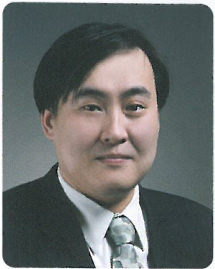


방송 통신 법률 상식

웹TV,
스마트TV와 IPTV

정수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yjung@shinkim.com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2010년 12월 13일, 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률적 대응이 쉽지 않은 중소규모의 디지털미디어 업체들에게 저작권, 계약, 보안 등 법률적 분쟁이 있을 경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이나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웹TV나 스마트TV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도는 들어보신 경험에 있을 것이다. 웹TV란 용어는 현재 매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일부에서는 웹TV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TV를 시청하는 서비스, 즉 고풍 TV나 TVing 또는 다음팟 TV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개념이다.

원래 웹TV라는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처음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무렵, TV에 셋탑박스를 부착하여 TV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구동시킨 후, TV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TV 방송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마트TV란 일반적으로 TV와 휴대폰, PC 등 3개 스크린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데이터의 끊김 없이 동영상 볼 수 있는 TV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TV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화상통화를 할 수도 있는 TV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반면 IPTV 서비스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 TV 사업법) 상으로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다만, 주파수를 할당 받아 행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TV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개념 정의만을 보고 웹TV와 스마트TV, 그리고 IPTV가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분이 가능하진지 모르겠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오래 전부터 방송 업계에 몸담아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를 한번에 구별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위와 같은 용어들이 어떠한 엄밀한 개념적 구분을 가지고 만들어진 용어라기 보다는 개념적으로는 유사한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구현방식이 다른 경우 이전과는 다른 기술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용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케팅 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기의 웹TV가 TV에 모뎀을 연결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자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면, IPTV는 초기의 모뎀이 아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브로드밴드망(이러한 브로드밴드망을 번역한 용어가 바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다)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기존의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 상의 패킷 신호로 변환시킨 후, 이를 TV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스마트TV는 기존의 TV에서 인터넷을 구동시킬 수도 있고(이러한 측면에서는 15년 전의 웹TV와 다른 개념이 아니다), 휴대폰 상의 화상통화 화면 등을 TV로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종 용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또한 마케팅에 응용되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는 것은 지적으로는 매우 흥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률 칼럼이라는 이 글의 주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행 법 상 이러한 웹TV(물론 초기의 웹TV가 아니라 단순히 인터넷으로 TV를 본다는 요즘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의미의 웹TV)와 스마트TV 그리고 IPTV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 번 구별해 보기로 하자.

일단, IPTV는 인터넷 망을 통하여 방송신호를 패킷 신호로 변환한 후, 이를 시청자에게 전송하여 방송을 보도록 하는 것은 TVing이나 고풍 TV 등의 웹TV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법적으로 결정적인 차이는 웹TV는 단말기(쉽게 말하면 컴퓨터 모니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인터넷에서 웹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하이퍼텍스트 문서 검색을 도와주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익스플로러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를 구동시켜, 일반 인터넷 망을 통하여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고, IPTV는 전용의 셋탑박스를 통하여 전송속도가 보장되는 특수 전용회선을 통하여 전송된 인터넷 패킷 신호를 일반 TV 신호로 변환시켜 TV 상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가동시키지 아니하고 TV를 시청하는 것이다.

극도로 단순화 시켜서 말하면 웹TV는 일반 인터넷 망을 통하여 컴퓨터로 TV를 보는 것이고, IPTV는 전용회선으로 송출된 인터넷 방송신호를 컴퓨터 단말기가 아닌 TV를 통해 시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아시게 되면 양자가 뭐 그리 크게 다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실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 법상 웹TV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가 되고, IPTV는 IPTV 사업법 상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로 분류가 되어 그 규제체계 및 정도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스마트TV는 말 그대로 TV에다가 인터넷 접속기능과 휴대폰과의 연결 기능 등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즉 방송서비스 자체는 기존에 제공되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이용하고, 스마트TV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TV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가동시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방송관련 규제는 받지 아니한다. 오히려 TV와 컴퓨터가 결합된 신종의 가전기기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최신 드라마를 방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로 보진, 거실에서 TV로 보진 과연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으며, TV로 보는 경우에도 이러한 드라마가 TV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가동시켜 방송되는지 아니면 브라우저의 구동 없이 전용의 셋탑박스를 통해 이루어지는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방송 및 통신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가 전달되는 형식에 따라 규제의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소위 플랫폼별 규제) 시청자에 대해 전달되는 콘텐츠 자체를 규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수평규제라고 부른다. 우리 법은 아직까지도 플랫폼별 규제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수평규제는 끊임없이 방송시장에서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